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¹

1.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구치소는 지방 정부가 운영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주에서 운영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형량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도소 재정비(AB 109) 결과 이제는 구치소에서도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수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¹이 문서는 미국 헌법 제 14 차 및 8 차 개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정신 질환 치료가 필요한 성인 수감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감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외에도 수감자 자신의 법적 조사나 법적 문제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 구치소나 교도소의 성인 수감자들은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예. 미국 헌법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4차 개정안의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은 미결수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징벌"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8차 개정안은 기결수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잔인하고 특이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상황의 경우 미결수의 권리가 기결수에 비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란?

반드시 특정 약물 치료나 특정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의 심각한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정신 질환 치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됩니다.

- a. 정신 질환 치료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감자 검사 및 평가 시스템;
- b. 분리 또는 격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치료;
- c. 면밀한 관찰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치료;
- d. 치료에 참여해야 하는 훈련받은 전문가;
- e. 정확하고 누락 사항이 없으며 비밀로 유지되는 정신 질환 관련 기록;

- f. 위험한 분량이나 방식으로 또는 적절한 감독 및 정기적인 평가 없이는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약품;
- g. 자해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를 식별하고 치료하며 감독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

4. 어떤 경우에 구치소나 교도소 관리들이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감자의 권리를 위반하게 됩니까?

구치소나 교도소 관리들이 "심각한 정신 질환 치료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 수감자의 기본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의 정신 질환 치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a. 수감 시 정신 질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b. 정신 질환자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 c. 정신 질환 담당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 d. 정신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격리 감옥이나 보안 최고등급("Supermax") 감옥에 수감할 경우;
- e. 심각한 정신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을 보다 적절한 시설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 f. 구속 기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 g. 정신 질환 증상이 있는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 h. 교도관들에게 정신 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지 않을 경우;
- i. 적절한 위기 개입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의도적인 무시”란?

"개인에 대한 상당한 상해 위험을 부주의하게 무시"할 경우 그 구치소 또는 교도소 관리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는 곧 구치소 또는 교도소 관리가 수감자에게 상당한 상해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무시"는 "부주의"와는 다릅니다. 의도적인 무시는 교도관이 수감자의 정신 질환 치료 요구를 일부러 모르는 채 한 것이고 "부주의"는 실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무시"는 또한 단지 정신 질환 전문가들 사이 또는 수감자와 교도소의 정신 질환 담당자들 사이의 정신 질환 치료에 대한 의견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감자는 정신 질환 담당자의 조치가 적절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 관리가 해당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도적인 무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치소나 교도소 관리의 모든 조치가 "의도적인 무시"가 없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 조치를 취했다면 구치소나 교도소 관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을 증명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구치소나 교도소 관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치소나 교도소 관리가 수감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해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직접** 또는 **간접**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소집 요청, 의료 기록, 불만신고, 고충제기 또는 불만신고의 성격을 띤 기타 기록, 불만신고 일자, 불만신고 접수자, 제공된 치료, 치료의 적절성, 치료 일자, 만나 본 정신 질환 담당자, 결정된 후속 치료의 성격, 후속 치료 실시 여부, 지연으로 인한 치료 미실시 및 불만신고와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추가 정보.

간접 증거란 수감자의 정신 건강 상태가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와 같이 분명한 상해 위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7. "심각한 정신 질환 치료 요구"란?

"심각한 정신 질환 치료 요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정신 질환 증상에 요구되는 치료;
- b.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수감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 증상.

8. 구치소 또는 교도소 관리는 수감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 질환 치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도관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 질환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있는 수감자라면 정신 질환 치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교도관에게 이야기하고 고충을 제기하는 등 구치소나 교도소의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법정에 불만신고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족이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정신 질환 치료에 관한 요청이나 불만신고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작성하여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10. 수감자의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다음 전화 번호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800-776-5746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자료를 읽은 후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영문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CalMHSA(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서비스 기관)는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자치주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CalMHSA가 실시하는 정신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프로그램은 주민 투표를 통과한 정신건강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조례 63조에

의거 자치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조례 63조는 그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주민 및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체제를 조달하고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WELLNESS • RECOVERY • RESILIENCE

